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,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,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- 이와 함께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조정사항>

다중이용시설	3단계	4단계	비고
식당 · 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▲ 22시~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(편의점 포함)▲ 22시~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 운영 · 이용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▲ 21시~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(편의점 포함)▲ 21시~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 운영 · 이용 금지▲ 운영시간 제한 강화 → 21시~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	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
공용공간 (실내시설 내 흡연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▲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▲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	의무사항
사적 모임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▲ 예방접종 완료자는 18시간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※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가능	식당 · 카페에만 적용

<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>

-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
 - *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
-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
 - *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

가. 적용 기간: 2021.8.23.(월) 0시 ~ 2021.9.5.(일) 24시

나. 적용 지역 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·도

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 단계

○ 수도권: 거리두기 4단계

○ 수도권 외 지역: 거리두기 3단계

*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
*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 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

*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대상 시설(35종)

- 1그룹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게임장
- 2그룹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1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종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기타시설(14종)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

업소, 국제회의 · 학술행사, 종교시설, 이 · 미용업

■ 고위험 사업장(2종) 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

붙임2: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붙임3: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② 교통시설

○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③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 ·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협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※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(카지노, 경륜 · 경마 · 경정 등)은 해당 수칙 적용

④ 모임 · 행사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■(3단계)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,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·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

→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(4단계 금지)

■(4단계) 사적모임 5명(18시~익일 05시 3명)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행사 금지

→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~21시 중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(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)까지 이용(사적모임) 가능

<50명 이상(3단계) 금지(4단계) 대상 모임·행사 예시>

법인·단체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행사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*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과 '추가적용 수칙' 적용

■ (시험 1~4단계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4: 수도권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붙임5: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⑤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⑥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- 3단계: 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○ 4단계: 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⑦ 학교(등교)

- 3단계/4단계: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

3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

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.
2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3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4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5.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6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. 끝 .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박혜수 과장 김재준
전결 2021.8.25.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971 (2021. 8. 25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